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94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10월 20일, 김기덕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- 다. 상정일자: 제3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12월 17일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김기덕 의원]

가. 제안이유

-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필요성 및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함.
- 특히, 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가운데, 자연과 하나 되는 산림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, 실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,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가 미흡함.
- 이에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에 기반한 산림교육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해 산림교육 지원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시장의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책무조항 신설(안 제3조).
- 2)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조항 신설함(안 제4조).
- 3) 산림교육 사업추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).
- 4) 산림교육의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시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교육 지원 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이 2012년 시행¹⁾되고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서울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(2020년)하여 산림교육 전문가 및 산림교육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사업추진(안 제5조), 산림교육 지원(안 제9조)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이견 없음.
- 다만,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이 ‘지역계획’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‘운영계획’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나, 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‘산림교육종합계획’ 및 그에 따른 ‘지역계획’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중복 되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는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‘법 제20조²⁾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’를, 제2호부터

1)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2. 7. 26.] [법률 제10940호, 2011. 7. 25., 제정]

2) 제20조(지원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
-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
-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
-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
-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
-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

제4호까지는 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 및 기타로 지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‘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’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법 제20조제3호에서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교육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바, 위 단서 조항은 중복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자칫 지원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론요지 : 생 략

7. 수정안요지 :

- 시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,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29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7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시장의 책무를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,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.

2. 주요 골자

- 시장의 책무에 신설된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2항).
- 산림교육지역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(안 제4조제2항).
-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”를 “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”로, “포함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해야”를 “포함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산림 교육의 기본 목표와”를 “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산림교육 전문가”를 “산림교육전문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산림교육프로그램”을 “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”을 “법 제20조”로, 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”을 “비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책무) (생 략)	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<u>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</u> <u>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‘산림교육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,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 <u>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제4조(산림교육지역 계획 수립·시행) ①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 계획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</u></p> <p>2. <u>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</u></p>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 계획 수립·시행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-----</u> ----- <u>포함하여야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<u>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-----</u></p> <p>2. <u>산림교육전문가 -----</u> -----</p>

	방안	
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계획을 해마다 <u>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	3. (생 략) 4. <u>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 5. ~ 7. (생 략)	3. (개정안과 같음) 4. <u>산림교육 지역프로그</u> <u>램-----</u> 5. ~ 7. (개정안과 같음)
1. ~ 6. (생 략)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</u> <u>행해야 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</u> <u>행해야 한다.</u>
〈신 설〉	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<u>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 1. <u>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</u> 2. <u>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 3. <u>산림교육 연구 사업</u> 4. <u>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</u> 5. <u>그 밖에 시장이 산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(개정안과 같음)

<p>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 	<p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----- 법 제20조 ----- ----- ----- 비용을 ----- ----- -----. 〈단서 삭제〉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 <p><u>〈삭 제〉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	--	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립·시행해야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 한다”로 한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
2.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
3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
4.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
7.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, 제5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

2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산림교육 연구 사업
4.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
5.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·시행)</p> <p>①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</p> <p>②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에 따라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</p>	<p>제4조(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·시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</p> <p>2.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</p> <p>3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</p> <p>4. 산림교육 지역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p> <p>5.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6.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</p> <p>7.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해야 한다.</u>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산림교육 사업추진)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

	<p><u>1.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</u></p> <p><u>2.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</u></p> <p><u>3. 산림교육 연구 사업</u></p> <p><u>4.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<u>제5조 ~ 제7조 (생략)</u>	<u>제6조 ~ 제8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와 같음)</u>
<u>〈신설〉</u>	<u>제9조(산림교육의 지원)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제8조 ~ 제10조 (생략)</u>	<u>제10조 ~ 제12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u>